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6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수정(안 제11조제3항)

5. 검토내용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나목(피부미용업)에 적용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인용조항 중에서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지번호를 반드시 명

시¹⁾해야 하므로 현행 조례 제2조제4호가 아래 법령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문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함.

참 고	
입법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91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4.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化妆품을 말한다.	3. “화장품”이란 「 <u>화장품법</u> 」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현행 조례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제10조제3호²⁾의 조문을 고려하여 제3조제2호의 ‘뷰티산업인력’을 ‘뷰티산업 전문인력’으로 정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 기관, 단체”란 문구가 쉽표로만 연결되어 있기에 마지막 쉽표를 “및”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³⁾
-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충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뷰티산업진흥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에, 제10조(기능)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71쪽 각주 284) 참조, 법제처

2) 제10조제3호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경영·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부록 25쪽 정비대상용어 1377번 참조, 법제처

- 제10조제1호의 “뷰티산업진흥시행계획”이라는 문구를 제3조에 따라 “뷰티산업진흥기본계획”으로 정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 제11조제3항의 근거 조례인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함.
- 개정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3. 11. 21. ~ ‘23. 11.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점, 조례 개정의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